

제341회 제1차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3. 8. 30.(수)

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 
안전관리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의안번호	343
발의일자	2023. 8. 17.
회부일자	2023. 8. 22.



교 육 위 원 회  
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#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황두영 의원 외 17명

### 2. 제정이유

- 경상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, 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학교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·구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유해물질의 예방·관리·점검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,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라.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마. 유해물질의 적절한 예방·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#### 4. 관련법령

- 「학교보건법」
- 「환경보건법」
-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(약칭: 어린이제품법)」

#### 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#### 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나. 부패영향평가: 부패 유발요인 없음
- 다.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해당부서의견: 의견없음
- 마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#### 7. 검토의견

##### 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, 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3조는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함
- 안 제4조는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5조는 학교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·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6조는 유해물질의 적절한 유지·관리·점검 및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도록 규정함
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,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9조는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기자재 및 학습교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

요한 상황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며,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등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정·시행하고 있는 다음의 9개 조례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**<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분야 관련 안전 조례 현황 >**

연번	조례명	수립계획	비고
1	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	학교 교통안전계획	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
2	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	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	
3	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	교육안전 종합계획	매년 수립
4	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	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기본 계획	
5	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	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	매년 수립
6	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	교통안전교육 시행계획	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
7	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	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	매년 수립
8	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	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	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
9	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	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 계획	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#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

#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수반요인

- 유해물질의 예방·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  
(안 제8조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

**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** ① 경상북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제8조에 따른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### 4. 작성자: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주무관 김태구(054-805-3943)